

보도시점

**2024. 11. 11.(월) 12:00** < 11. 12.(화) 조간 >

배포 2024. 11. 11.(월) 08:30

#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

-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'공정위')는 2024.11.11.(월) **윤석열 정부** 출범 이후 **공정거래분야**의 **성과** 및 **향후 정책 추진계획**을 발표했다.

### < 공정거래분야 성과 >

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'공정거래'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.

# 1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

먼저,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·기반(인프라) 구축을 통해 '공정한 시장경제'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.

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▲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(플랫폼·통신·사교육·의약품·게임 등)와 ▲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 (반도체·건설 등) 등에서 총 5,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·시정하고 과징금약 1조 1,557억 원을 부과했다. 아울러, ▲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('23.1월), ▲공공분야 입찰담합('23.6월)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.

# < 사건처리 세부내역 ('22.5.10.~'24.11.5.) >

처리 건수		과징금 부과		 고발	
총 건수	경고 이상 건수	시정조치 건수	건수	금액	고달
 5,837건	3,076건	574건	289건	11,557억 원	75건

### ❷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

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**중소기업·소상공인**의 **공정한 거래기반 강화**와 **소비자 권익 제고**를 위해서도 노력했다.

우선, ▲납품단가 연동제 도입('23.7월), ▲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('23.9월~), ▲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('24.2월)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\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(하도급)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: (<sup>(21)</sup>57.2%→(<sup>(22)</sup>62.8%→(<sup>(23)</sup>63% 원사업자와의 거래만족도 : (<sup>(21)</sup>72.2%→(<sup>(22)</sup>73.9%→(<sup>(23)</sup>74.6% (가 맹)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비율 : (<sup>(21)</sup>39.7%→(<sup>(22)</sup>46.3%→(<sup>(23)</sup>38.8% (대리점) 거래관행 만족도 : (<sup>(22)</sup>90.2%→(<sup>(23)</sup>90.3%

또한, 디지털·세계화(글로벌)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. **^다그패턴 규율**(전자상거래법 개정, '24.2월), **^해외**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('24.3월) 등을 추진했고, **^눈속임상술(슈링크플레이션)** 부당행위 지정('24.5월), **^집단분쟁조정**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('24.9월, 약 219억 원), **티몬·위메프**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.

# ❸ 국민불편·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

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·부담을 일으키는 **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**하고,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**법집행시스템**도 대폭 **개편**하였다.

우선, ▲대형마트 및 차량공유·렌터카 영업규제,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**경쟁제한적 규제**를 **개선**\*하여 국민의 쇼핑·이동 편의를 확대하고, ▲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, 공시부담 경감 등 **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**(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, '22.12월 및 '24.1월~)했다.

\*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('23.8월), 주차장법 개정('24.1월), 자동차관리법 개정('24.2월),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중

아울러, <sup>\*</sup>정책-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('23.4월), <sup>\*</sup>조사 절차 개선 ('23.4월)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,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\*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.

\*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 22.2% 단축, 처리 건수 14.6% 증가('23년말 기준)

### < 향후 정책 추진계획 >

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**역동적 혁신**과 **민생 안정**을 지원하는 **공정한**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### 1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

먼저, **^독과점 플랫폼의 반**(反)경쟁행위에 대한 신속·효과적 대응(공정거래법 개정), **^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** 입점업체에 대한 **대금 정산기한 준수** 및 **별도관리** 의무부여, **거래관계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**(대규모유통업법 개정)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,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·시정할 것이다.

한편, 인공지능(AI), 기후테크, 문화콘텐츠(웹툰·웹소설 등)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·신(新)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경제규모 성장,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신생기업(스타트업)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\*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.

\* (지정)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(현재 자신총액 5조 원 이상)을 국내총생산(GDP) 연동방식으로 변경 (기업형벤처투자사, 이하 'CVC') 일반지주회사 보유 가능 CVC에 창업기획자 추가 및 외부 출자·해외투자 비중 상향

(금융·보험사 의결권)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 허용,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 명확화

### 2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

우선, 민생 밀접분야에서 ▲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, ▲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.

또한, ◆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\*, ◆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\*\* 등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.

- \* ▲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및 탈법행위 감시, ▲현저한 부당특약의 사법(私法)상 효력 무효화, ▲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하는 '금지청구권' 도입
- \*\* ▲필수품목 확대 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화 현장안착 지원, ▲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 시정

아울러, 경제활동의 디지털·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▲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\*, ▲신유형 거래(SNS, 구독 경제,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)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·시정\*\*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.

- \* ★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, ★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 (전자상거래법 개정)
- \*\* ◆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마켓의 소비자 거래행태 및 법 준수여부 점검, ◆인터넷동영상 서비스(OTT)·음원서비스·온라인쇼핑몰의 중도해지권 방해·제한, 게임 아이템 정보 거짓 고지 관련 법위반 행위 시정

# 붙임 :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

LfLf A 17	경쟁정책국	책임자	과 장	홍형주 (044-200-4300)
담당 부서	경쟁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하리 (044-200-4301)







#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

# 1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

- ① (공정경쟁 확립) '공정한 시장경제 구축'을 위해 담합, 독점력 남용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하고,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  - ① 2.5년간('22.5.10.~'24.11.5.) 사건 총 5,837건 처리, 과징금 1조 1,557억 원 부과

#### < 사건처리 세부내역 >

처리 건수		과징금 부과		고발	
총 건수	경고 이상 건수	시정조치 건수	건수	금액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5,837건	3,076건	574건	289건	11,557억 원	75건

② 특히, ▲반도체·건설·철근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**주력산업 분야**와 ▲플랫폼·통신·사교육·의약품·게임 등 **국민 생활 밀접분야** 적극 시정

< 주요 사건 내역 >

법위반 유형	사건	일자(발표일 기준)	과징금액
	<b>철근</b> 입찰담합	′22.8월	2,565억원
담합	<b>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</b> 담합	′23.4월	290억원
dЫ	<b>예방접종 백신</b> 입찰담합	′23.7월	409억원
	<b>빌트인가구</b> 입찰담합	′24.4월	931억원
	<b>모빌리티(택시호출앱)</b> 콜 차단 및 몰아주기	'23.2월, '24.10월	995억원
[ 권래 10	경쟁 <b>앱마켓</b> 출시 방해	′23.4월	421억원
독점력남용 불공정행위	<b>반도체</b> 장기공급계약 강제	′23.9월	191억원
200011	<b>의약품</b> 리베이트	'22.11월 '23.10월 '24.1월	310억원
	<b>플랫폼 검색순위 조작</b> 등 고객유인	′24.6월	1628억원
부당	총수2세 소유회사 <b>일감(공공택지)</b> 몰아주기	′23.6월	608억원
내부거래	계열사 <b>물량(유연탄)</b> 몰아주기	′23.7월	110억원
부당 표시광고 소비자기만	<b>5G 이동통신</b> 성능 허위과장	′23.5월	336억원
	<b>사교육시장</b> 학원 실적 등 허위과장	′23.12월	18억원
	<b>온라인게임</b> 확률형아이템 거짓·기만행위	′24.1월	116억원

- ③ 플랫폼 반칙행위 및 담합행위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·인프라 구축
  -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('23.1월) 및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를 위한 협업 확대(공정거래법 개정, 23.6월) 등

- ④ 분쟁조정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기업·소비자 피해의 신속·직접적 구제에도 상당한 성과 도출
- '23년 분쟁조정 성립률은 **79**%, 조정금액 **1,229억 원으로 역대 최고** 수준 < 분쟁조정 내역 >

		• • •		
구분	′21년	'22년	′23년	'24년 (10월말)
분쟁조정 성립건수(성립률)	1,156건(75%)	1,202건(78%)	1,278건(79%)	1,236건(76%)
조정금액	952억원	889억원	1,229억원	1,120억원

- ② (경제적약자 거래기반 강화)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정당한 몫 보장 및 부담 경감 위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, 경기 취약분야 위험에 선제적 대응
  - ① **▲납품단가 연동제** 법제화('23.7월), **▲가맹분야 필수품목** 개선('23.9월~), **▲기술유용행위에** 대한 **징벌적 손해배상** 강화('24.2월) 등 제도개선<sup>\*</sup>
    - \* (연동제) 원재료 가격 1%p 상승 시 납품단가 0.62%p 상승 효과('23.6~8월 시범운영 조사결과) (필수품목)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의무화('24.1월, 가맹사업법 개정) (기술유용)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 한도 상향(3→5배, '24.2월 하도급법 개정)
  - ② 건설업 불황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,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 보급('24.3월)
  - ③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등을 통해,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 중\*
    - \* (하도급)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: <sup>('21)</sup>57.2%→<sup>('22)</sup>62.8%→<sup>('23)</sup>63% 원사업자와의 거래만족도 : <sup>('21)</sup>72.2%→<sup>('22)</sup>73.9%→<sup>('23)</sup>74.6%

(가 맹)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비율 : ('21)39.7%→('22)46.3%→('23)38.8%

(대리점) 거래관행 만족도 : (<sup>(22)</sup>90.2%→(<sup>(23)</sup>90.3%

#### <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분야 주요 사례 >

분야	주요 사례
하도급	▶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 등 부당이익 수취한 G사 건('22.8월) ▶ 2차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P사 건('22.8월)
가맹	▶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한 M사 건('24.1월) ▶ 코로나 시대 24시간 편의점 영업을 강요한 E사 건('24.2월)
유통	▶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개사 건('23.11월) ▶ 납품업자에 계약서 지연교부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한 2개 백화점 건('23.4월)
대리점	▶ 대리점과 사전 협의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G사 건('23.6월) ▶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 미지급 및 판매목표를 강제한 3개 가구사 건('24.4월)

- ③ (소비자 권익 제고) 온라인거래 新유형 피해(다크패턴, SNS뒷광고 등), 해외 온라인 플랫폼('C커머스' 등), 슈링크플레이션 등 관련 신속 대처
  - ① (新유형) 다크패턴을 새로 규율하는 근거 마련(전자상거래법 개정, '24.2월), SNS뒷광고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의심게시물 6만여 건 시정('22~'23년)
  - ② (해외 플랫폼) 소비자 피해 우려 증가에 따라 신속한 C커머스 조사 개시 및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,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('24.2월~)
  - ③ (슈링크플레이션) 사전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 ('24.5월)하고 가격정보포털(소비자원 '참가격')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('24.1월)
  - ④ (집단분쟁조정)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219억 원 보상('24.9월) 및 티몬·위메프 사태 후 여행·숙박·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조정개시('24.9월~)
- ④ (규제 개선·기업결합 심사) 국민불편·기업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경쟁 저해로 소비자피해 등 우려가 있는 M&A는 깐깐하게 심사

### ① 국민불편 규제 발굴·개선

- 공휴일 휴업, 새벽배송 관련 대형마트 규제 완화, 차량공유(카셰어링)· 렌터카 편도반납·주차 확대, 자동차 부품 용어개선 등 국민편의 증진
  - \* (대형마트) ♣휴업일 평일 전환, ▲영업시간 外 새벽배송 허용(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) (카셰어링·렌터카) ▲대여지역 외 반납지 영업제한 완화(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, '23.8월), ▲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구획 설치 근거 마련(주차장법 개정, '24.1월) (자동차부품)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용어변경 (자동차관리법 개정, '24.1월)

# ② 기업부담 규제 합리화

-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(혈족 6촌·인척 4촌→혈족 4촌·인척 3촌 이내)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('22.12월)
-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·경영·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 마련('24.5월)
-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, 공시정보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\*('24.1월~)
  - \* ▲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상향(50억 원→100억 원 이상), ▲8개 분기공시 항목 연 1회 공시로 전환, ▲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근거 마련 등

- ③ 경쟁저해 우려 기업결합 시정 및 심사방식 현대화
- 독과점 및 혁신저해 우려 M&A는 심충심사하여 효과적 시정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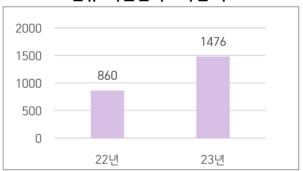
< 기업결합 시정 주요 사례 >

	1=== 10 1 1 1
분야	주요 사례
반도체	▶ 반도체 H/W 업체(B사)와 S/W 업체(V사) 간 국제기업결합 건('23.10월) → 호환성 보장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생태계 혁신 보호
학원	▶ 공무원 학원 시장 1, 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('24.4월) → 결합을 금지하여 경쟁사 제거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 40만 수험생 피해 우려 차단
콘텐츠	▶ 플랫폼(K사)와 케이팝 콘텐츠 사업자(S사) 간 기업결합 건('24.5월) → 자사 음원 우대여부 점검기구 설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음원시장 경쟁 촉진

-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및 신고면제 범위 확대('24.8월),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('24.5월) 등 제도 선진화
- 5 (조직개편 성과) 정책-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('23.4월) 결과, 신속한 사건처리, 정책품질 제고 등 유의미한 성과 도출
  - ① 지난 1년간('23년) 전년('22년) 대비 전체 **사건처리 건수는 14.6% 증가** (1,818건→2,084건)하고, 평균 **사건처리 기간은 22.2% 단축**(221일→172일)
    - 조사 전담부서에서 **민생현안** 등에 **신속하게 대응**('23년)한 결과, 신규 **직권인지 사건 수**가 전년('22년) 대비 **71% 증가**(860건→1,476건)

<사건처리 실적>

<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>



- 조사목적·범위를 **공문에 구체화**하고, **관련성 없는 자료를 반환·폐기**하는 **개선**('23.4월)**된 조사절차 안착** 및 사업자 평가결과 향상(현장 간담회, '23.6월~)
- ② '23년 **정부업무평가**\*에서 주요정책 부문 '**우수 등급(A)'** 획득('24.2월) 및 '23년 **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**에서 '최고 등급(1등급\*\*)' 선정('23.12월)
  - \*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만족도 조사 포함 \*\* 조사-정책 분리 등 항목 평가에서 만점 획득

# 2 향후 정책 추진계획

- 가.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
- []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乙 사업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
  - ① (독과점) 플랫폼 독과점 문제\*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
    - \* ●자사우대, ❷끼워팔기, ❸멀티호밍 제한, ④최혜대우 요구 등 4대 反경쟁행위
- ② (갑을)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'대규모유통업자'에 포함하여 대금 정산기한 별도관리, 거래관계 투명성·공정성 조향\*을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
  - \* 계약서 작성·교부, 표준거래계약서, 경영활동 간섭,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등
- [2]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
  - ① (독점력 남용) 국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판매 행위 등 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점검
  - ② (불공정) 특정 분야의 상품·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(버티컬플랫폼)의 불공정 약관조항 적극 시정
- ③ 미래·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보완
  - ① (AI·이커머스)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AI 및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·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 발굴·심충분석한 「정책보고서」 발간
  - ② (기후테크)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·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 발굴· 개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\* 마련
    - \* 「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」의견조회 중
  - ③ (콘텐츠) 웹툰·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\*을 시정하고,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·개정\*\*
    - \* ▲저작권의 포괄적 이용허락, ▲계약기간 자동연장, ▲저작권 분쟁시 면책조항 등 \*\* 문체부 협업, 웹툰 표준계약서('24.6월 완료), 웹소설('24.12월)

### 나.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

- [] 경제규모 성장·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화
  - (기준조정)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(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)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
- ② 스타트업 발굴·투자 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
  - ① (출자·투자) 투자조합 공동운용(Co-GP) 활성화 및 투자규모 확대, CVC의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출자·해외투자 비중 상향\*
    - \* 외부출자 비중: (現) 40% → (改) 50%, 해외투자 비중: (現) 20% → (改) 30%
  - ② (창업기획자) 대기업의 초기창업기업 투자 확대, 성장 견인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\* 추가
    - \* (現) 벤처투자회사·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보유 가능 → (改) 창업기획자(초기 창업기업 보육투자) 추가
- ③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금융·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합리화
  - ① (행사확대) 대기업집단 금융·보험사가 보유하는 금융 밀접업종(핀테크 등) 영위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\*(공정거래법 개정)
    - \* (現) 피취득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→ (改) 금융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
  - ② (대상명시) 의결권 제한 대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의 범위\*를 제도 취지에 맞게 법에 명시·열거(공정거래법·시행령 개정)
    - \*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'K. 금융 및 보험업 영위회사'로 일괄 규정
- 4 국민 생활 밀접분야 부당내부거래 및 탈법행위 엄정 대응
  - ① (민생) 제약·부동산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 내부거래 중점 점검
  - ② (금융) 복잡한 금융상품, 위장계약 등의 외형을 갖추고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
    - \* 자금보충약정, TRS(총수익스와프: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) 등 우회적인 채무보증 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

### 다. 중소기업 ·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

- ① 민생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경쟁 촉진
  - ① (담합)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(♣실생활 밀접 의식주, ♣가계 지출 비중이 큰 금융·통신, ♣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) 담합 엄정 대응
    - 특히, 은행 LTV(부동산 담보인정비율), 주류, 식품, 교복 등 민생품목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·면밀하게 처리
  - ② (규제개선) 민생 분야의 독과점 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규제 개선
    - (먹거리) 제빵·주류 등 독과점구조와 경쟁제한 규제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어 국민부담이 큰 분야의 시장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
    - (실생활)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, 중고차 분야 등의 규제개선 추진
- 2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기반 마련 및 피해구제 강화
  - ① **(연동제) 납품단가 연동제**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및 제도 근간을 해치는 **탈법행위**(예: 쪼개기계약, 미연동강요) 감시
    - \* 연동제 관련 예규 제정 및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(가이드북) 마련
  - ② (부당특약) 불공정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현저히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사법(私法)상 효력 무효화(하도급법 개정)
  - ③ (기술유용)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법위반 예방·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하도급법 개정)
- ③ 가맹점주 부담완화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
  - ① (법집행) 햄버거, 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 등 집중 조사 및 시정
    - \* 빨대·냅킨·쇼핑백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믈품의 필수품목 지정 및 구매 강제
  - ② (제도개선)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확대 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화 현장안착 지원(고시 제정)

### 라.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

- 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위반 점검
  - ① (해외 플랫폼)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통신판매 중개업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\* 지정 의무화(전자상거래법 개정)
  - ② (임시중지)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\*(전자상거래법 개정)
    - \* (現) 법 위반이 '명백'한 경우 → (改) 법 위반이 '명백히 의심'되는 경우
  - ③ (법집행) 최근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·점검
- 2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
  - ① (SNS)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한 SNS 마켓\*의 소비자 거래 행태 조사 및 전자상거래법상 책임·의무 준수여부 점검
    - \*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쇼핑 플랫폼
  - ② (확률형 게임아이템) 주요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관련 거짓고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
  - ③ (중도해지권) OTT·음원서비스·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·제한행위 중점 점검·시정
    - 또한, 일부 **온라인 쇼핑몰**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으로 기존 회원들이 **멤버십 가격인상에 동의**하도록 **유도**한 혐의에 대해서도 점검
- ③ 알뜰한 소비생활 지원을 위해 소비자 이용이 많은 결제수단 개선
  - ① (모바일상품권)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('기프티콘')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환불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(표준약관 개정)
  - ② (포인트)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(포인트)의 짧은 유효기간(소멸시효)을 연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

# 주요 처리사건 개요

### < 1 플랫폼 부당고객유인 사례('24.6월) >

- (시장상황)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서 '검색 랭킹'은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며 쇼핑몰 매출·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
- o (법위반행위)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인 A사는 자사 상품(직매입·PB상품) 판매 촉진을 위해 알고리즘 조작, 임직원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등 위계행위로 자사 상품 검색 순위를 중개상품보다 상승시킴
- (시장피해) A사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판매량이 감소하고, 소비자들은 A사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음
- (시정조치) 공정위는 A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,628억 원을 부과하고, A사 및
  자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
- (조치의의)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### - < 2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사례(23.2월, 24.10월) > -

- (시장상황) 일상생활 대부분이 스마트폰 조작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오늘날, 택시 호출
  앱은 택시 사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상황
- (법위반행위) 시장에서 90% 이상의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B사는 ▲자신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고, ▲경쟁 가맹택시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하게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후 거절 시 일반 호출서비스를 차단
  - (**콜 몰아주기**) B사는 택시 호출 시 일반택시가 승객에게 더 가까이 있어도 **가맹택시**가 **우선 배차**되도록 하거나, 가맹택시에게는 **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제외·축소**시켜 가맹택시기사의 운임수입이 일반택시보다 높아지도록 함
  - (**콜 차단**) B사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**운행정보**(출발·도착 좌표, 픽업·주행별 시작· 종료시간 등), 소속기사 정보(차량번호, 가맹 가입·탈퇴 내역)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, 거절 시 일반 호출서비스를 차단함
- (시장피해) B사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'19년 14.2%에서 '21년 73.7%, '22년 69%로 크게 확대되었고, 이는 B사의 택시 호출 앱에 얽매이게 되는(locked-in) 택시 기사와 승객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에서 B사의 시장지배력이 유지·강화되는 결과를 초래
- o (시정조치)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괴징금 995억 원 부과(콜 몰아주기 271억 원 콜 차단 724억 원(잠정)]
- (조치의의) 택시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
  것으로 기대되며,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

### < ③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 사례('23.4월) >

- (시장상황) 안드로이드 OS 사업자인 C사는 자신의 앱마켓을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메인화면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
  - 자신의 앱을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싶은 스마트폰 게임앱 개발사로서는 C사 앱마켓에 자신의 앱을 출시하고 홍보하는 것에 사업의 사활이 걸림
- o (법위반행위) C사는 게임앱 개발사의 이러한 사정을 적극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성장을 막음
  - '16.6월 후발주자인 **D사**가 **경쟁 앱마켓을 출시**하자 C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앱 개발사들로 하여금 **D사 앱마켓에 게임앱을 출시**하지 **못하도록 강제**
  - 구체적으로, C사는 게임앱을 자기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해야 메인화면 노출, 해외 진출·마케팅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압박
- (시장 피해) 이러한 행위는 '18.4월까지 지속 → 그 결과 신규로 출시할 게임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D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, C사 점유율은 크게 상승
- o (시정조치) 공정위는 과징금 약 421억 원을 부과하고,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C사와 게임회사 간의 계약 수정을 명령
- o (조치의의)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의 기반 위에서 여러 앱마켓 사업자들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  - 또한 앱마켓 시장은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OS 등 디지털 시장 전반에 그 효과를 미치므로, **모바일 생태계 전반**에도 **긍정적**인 **영향**이 기대됨

### < 4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거짓·기만 사례('24.1월) >

- (법위반행위) 국내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체인 G사가 온라인 PC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, 인기옵션이 적게 나오게 확률구조를 바꾼 후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
  - 당초에는 확률을 옵션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, 이용자가 선호하는 인기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특정 중복옵션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, 심지어 기존과 동일하다고 거짓으로 알림
  - \*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의 구체적 종류· 효과·성능이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,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려는 이용자의 구매 선택 시 확률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
- (시정조치)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였으며, 이후 소비자원을
  통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(보상금액 약 219억 원 상당)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
- (조치의의)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,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

### < 5 총수2세 소유회사 일감몰아주기 사례(°23.6월) > ----

- o (시장상황) 기업집단 E는 이른바, '벌떼입찰'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함
  -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**페이퍼컴퍼니**에 가까운 **다수**의 **계열회사**를 **설립**하여 **입찰에 참가**시키고, 심지어 **협력관계에** 있는 **비계열사**까지 **동원**해서 입찰에 참가시킴
- (법위반행위) E는 확보된 공공택지 대부분을 총수 2세 소유 계열회사에 몰아줌
  - 기업집단 E 소속회사 F는 2세 소유 계열회사에게 ▲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을 무상 대여하거나, ▲공공택지 사업 관련 PF대출(총 2조 6,393억원)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고, ▲낙찰받은 공공택지나 진행 중이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단한 후 2세 회사에 양도
- o (행위 결과) 이러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통해 총수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, 이를 통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도 완료
- o (시정조치) 공정위는 해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 부과
- (조치의의)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2세로의 편법적 부(富)이전에 악용한 행위를 적발·시정

#### < 6 국민 경제·생활 밀접분야 기업결합 심사 > -

- (개요) 반도체('23.10월), 학원('24.3월), 음원('24.5월), 조선업('24.7월)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M&A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독과점 우려 방지
- (조치사항) 경제분석, 전문가 자문,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을 통해 M&A에 따른 경쟁사 차별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관련 조치 부과
  - (반도체) 서버 부품 업체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를 인수한 후, 소프트웨어 호환성 인증 거절·지연 등을 통해 경쟁 부품 업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기간(10년)의 시정조치 부과
  - (학원) 공무원 학원 시장의 1, 2위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수강료 인상 등으로 40만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해당 M&A를 금지('16년 이후 8년 만의 미승인 조치)
  - (음원) 국내 1위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K-POP 음원 제작시장 유력 사업자 주식 취득을 조건부로 승인(자사 음원을 불합리하게 우대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 점검기구를 설치하는 등 시정조치 부과)
  - (조선업) 선박·선박엔진·엔진부품 등 조선업 전반의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사업자의 엔진 부품 업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(경쟁 엔진사들에게 엔진 핵심 부품(크랭크샤프트)의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 부과)
- (조치의의) 주력산업(반도체·조선)에서의 혁신·성장을 촉진하고, 국민 생활 밀접분야 (학원·음원)의 가격 인상, 경쟁 저해 등의 피해 예방

### 

- (개요) 공정위는 철근('22.8월), 승용차('23.2월), 예방접종 백신('23.7월), 철강선('23.10월), 빌트인 가구('24.4월), 시스템 욕실('24.10월) 등 국민경제·생활 밀접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히 이루어지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
- ① (철근) 국내 철근 시장의 99%를 점유하고 있는 11개 제강사들이 '12년~'18년 지자체, 시·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최저 투찰가격을 합의
- ② (승용차)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신기술 개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선택권을 제한
- ③ (백신) 국가예방접종 백신 사업 관련 32개 사업자들이 '13년~'19년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
- ④ (철강선) 10개 제강사가 '16년~'22년까지 침대·자동차용 스프링, 통신선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강선의 가격을 담합하여 침대용 강선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계 경제부담을 초래
- ⑤ (빌트인 가구)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'12년~'22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**낙찰예정자**를 정하고 **투찰가격**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 →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
- ⑥ (시스템 욕실)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'15년~'22년까지 아파트·호텔· 기숙사 등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
- (시정조치) 공정위는 사업자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,810억 원을 부과
  (철근 2,565억 원, 독일 승용차 290억 원, 백신 409억 원, 철강선 548억 원, 빌트인 가구 931억 원, 시스템욕실 67억 원)
- (조치의의) 국민 생활 밀접분야 및 주력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하여
 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

### 

- (개요)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분야와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
 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
- ① (일상 먹거리)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피자·패스트푸드 등 외식 업종 가맹본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(예: 과다한 필수품목 지정) 제재
- ② (편의점·전문매장)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(예: 판촉비 전가, 부당이익 수취) 제재
- ③ (자동차·기계 부품) 핵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자재 분야에서 기술 자료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기술유용행위 집중 감시·제재
- ④ (뿌리산업)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

#### < 분야별 주요 사건>

분야	주요사건
일상 먹거리	▶ 피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15억 원) 부과('24.10월)
20 크기니	▶ 패스트푸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 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3억 원) 부과('24.1월)
편의점·	▶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, 판촉비 등 부당이익을 수취한 편의점 운영 대형유통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244억원) 부과(22.8월)
전문매장	▶ 미용·건강 전문유통채널 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독점을 강요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(19억 원)부과, 법인 고발('23.12월)
자동차	▶ <b>완성차업체 1차사</b> 가 2차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11억 원) 부과, 법인 고발('22.8월)
기계부품	▶ 중장비 제품 업체가 협력사에 기술자료(카메라 케이블 도면, PCB 등)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1억 원) 부과, 법인·대표 고발('23.4월)
ᄪᆲᅜᅜ	▶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가 <b>금형도면</b> 을 요구하고 이를 <b>제3자에게 제공</b> 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0.3억 원) 부과('24.2월)
뿌리산업	▶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가 <b>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</b> 을 하면서 <b>하도급대금을 미지급</b>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2억 원) 부과('24.8월)

(조치의의) 중소·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
 역동성을 촉진하고, 가맹점주·납품업체·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사업여건도 개선